

해외사업 협력을 위한

해외건설협회와 대한지적공사간 업무협조약정

해외건설협회(이하 “ICAK”)와 대한지적공사(이하 “LX”)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수행 관련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약정(이하 “약정”)을 체결한다.

제 1조 (목적)

본 약정은 ICAK와 LX가 해외시장 진출 관련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협력내용)

ICAK와 LX는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, 계획수립, 개발,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- ① 해외사업 발굴·시행 및 평가를 위한 공동 협력
- ②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정보(입찰정보, 시장정보) 지원
- ③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상호협력 프로그램 확대
- ④ 해외로드쇼 및 국제박람회 공동 컨퍼런스 개최
- ⑤ 해외사업 리스크 및 기술 자문 등의 지원
- ⑥ 해외 지부 공동 근무를 위한 협력
- ⑦ 기타 해외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공동 협력

제 3조 (다자간 협력)

ICAK와 LX는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연구원, 학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 4조 (경비사용)

본 약정에서 규정한 업무협조 수행시 발생하는 제경비의 사용 및 정산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정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조 (신의성실)

ICAK와 LX는 상대방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.

제 7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된다.
2.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하여 1개월 전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지속된다.
3.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약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,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8월 14일

2013. 8. 14.

해외건설협회
회장 최재덕

2013. 8. 14.

대한지적공사
사장 김영호